

더폴 우정 입주자 모집공고



※ 『더폴 우정』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2025.08.14.) 전문내용 일부 정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기존	정정
공급대상	84.8559A : 4세대	84.8559A : 2세대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 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 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76-68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2024.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울산광역시(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8.14(목)	2025.08.25.(월)	2025.08.26.(화)	2025.08.27.(수)	2025.09.02.(화)	2025.09.05.(금)~ 09.08(월)	2025.09.15.(월)~ 09.17(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ujeong.thepol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14. (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 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8.14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예)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 - 해당 지역 신청 가능.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부산 및 경남 거주 - 기타 지역 신청 가능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8.25.(월)	2025.08.26.(화)	2025.08.27.(수)	2025.09.02.(화)	2025.09.05.(금)~ 09.08(월)	2025.09.15.(월)~ 09.17(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1-6)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절점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한은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5.09.02.)로부터 아래 기간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건축과-**35924호(2025.08.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4층 2개동 총 316세대

[특별공급 181세대(기관추천 30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71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2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358	01	84.8559A	84A	84.8559	25.7326	110.5885	70.7822	181.3707	17.5521	158	15	23	36	4	14	92	66	2
	02	84.7877B	84B	84.7877	27.2426	112.0303	70.7253	182.7556	17.5380	84	8	12	19	2	7	48	36	2
	03	84.7877C	84C	84.7877	27.8623	112.6500	70.7253	183.3753	17.5380	73	7	10	16	2	6	41	32	0
	04	84.7877D	84D	84.7877	27.8730	112.6607	70.8090	183.4697	17.5380	1	0	0	0	0	0	0	1	0
	합계									316	30	45	71	8	27	181	135	4

※ 각 주택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 84B, 84C, 84D 타입은 주거공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타입이 구분되어 있으며, 전용면적은 같으니 반드시 동호배치를 확인하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 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본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주상복합건축물로, 시설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의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용도별 대지지분에 대해 대지분할,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아울러 주차장도 용도별로 지정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대상의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또는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4	3	14
	장애인(울산)	4	2	2	8
	장애인(부산)	2	1	1	4
	장애인(경남)	2	1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3	12	10	45
신혼부부 특별공급		36	19	16	7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2	2	8
생애최초 특별공급		14	7	6	27
합 계		92	48	41	18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확장비별도)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계약금	2차계약금 (1달이내)	합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	입주시 잔금
84A	101동 102동 1호, 4호	2층~4층	6	174,220,000	420,780,000	595,000,000	10,000,000	19,750,000	29,75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208,250,000
		5층~8층	12	178,020,000	429,980,000	608,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9층~15층	28	181,830,000	439,170,000	621,000,000	10,000,000	21,050,000	31,05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217,350,000
		16층~25층	36	185,930,000	449,070,000	635,000,000	10,000,000	21,750,000	31,75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222,250,000
		26층~35층	40	189,730,000	458,270,000	648,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226,800,000
		36층~44층	36	194,420,000	469,580,000	664,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232,400,000
84B	101동 2호, 3호	2층~4층	6	174,220,000	420,780,000	595,000,000	10,000,000	19,750,000	29,75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208,250,000
		5층~8층	8	178,020,000	429,980,000	608,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9층~15층	14	181,830,000	439,170,000	621,000,000	10,000,000	21,050,000	31,05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217,350,000
		16층~25층	18	185,930,000	449,070,000	635,000,000	10,000,000	21,750,000	31,75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222,250,000
		26층~35층	20	189,730,000	458,270,000	648,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226,800,000
		36층~44층	18	194,420,000	469,580,000	664,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232,400,000
84C	102동 2호, 3호	7층~8층	3	178,020,000	429,980,000	608,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9층~15층	14	181,830,000	439,170,000	621,000,000	10,000,000	21,050,000	31,05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217,350,000
		16층~25층	18	185,930,000	449,070,000	635,000,000	10,000,000	21,750,000	31,75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222,250,000
		26층~35층	20	189,730,000	458,270,000	648,000,000	10,000,000	22,400,000	32,4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226,800,000
		36층~44층	18	194,420,000	469,580,000	664,000,000	10,000,000	23,200,000	33,2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232,400,000
84D		7층	1	178,020,000	429,980,000	608,000,000	10,000,000	20,400,000	30,4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212,800,00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대지지분포함)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101동은 22층 , 102동은 20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상기 분양가격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 면적 및 주차장,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 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청약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건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기타 추가 선택품목의 금액은 미 포함된 공급금액으로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계약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를 연체할 경우, 추후 계약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용도로 납부하는 금액에서 우선 연체료가 공제되고, 연체료 공제 후 잔액으로 미납 계약금 또는 중도금 원금이 납부순서에 따라 차감되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납부일) 이후에 과세 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을 입주 또는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및 고지서상의 명의 여부에 관련 없이 납부하여야 함.. 이때 계약자의 제세공과금 등 제반 금액 납부 불이행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때는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 및 위임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외국인 등이 국내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할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미거주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리목적의 법인이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주택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이행을 책임을 진다. 단, 납부기일 이전에 선 납부한 금액 중 납부기일이 사업주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날 이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제외함.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을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함.
- 견본주택은 84A타입, 84B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84C, 84D 타입은 84B타입과 평면은 같으나 세부면적의 차이로, 타입이 구분되어 있음. 청약도 각각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노부모부양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주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그밖에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그밖에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구 분	그밖에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 복지팀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

	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4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tr> <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 <th>기준</th><th>점수</th></tr> <tr> <td>계</td><td>100</td><td></td><td></td><td></td></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3명</td><td>35</td></tr> <tr> <td>2명</td><td>25</td></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 <td>2명</td><td>10</td></tr> <tr> <td>1명</td><td>5</td></tr> <tr> <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rowspan="2">-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 <td>한부모 가족</td><td>5</td></tr> <tr> <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td></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able>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울산광역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7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07.01. ~ 12.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비고

-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혹은 경상남도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td></tr></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그밖에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그밖에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구 분	그밖에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5">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5">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적용기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table><tr><td>산정기준</td><td></td></tr></table>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tr><td>단계</td><td>비율</td><td>내용</td></tr><tr><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tr><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tr><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tabl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산정기준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산정기준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기타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단 사례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 ※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형별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 불법행위 재공급'에 따른 계약자는 모두 분양권(주택 소유)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공급 주택]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공급세대</th><th rowspan="2">접수</th><th rowspan="2">당첨자</th><th rowspan="2">정당계약 (분양권 ①)</th><th colspan="2">잔여세대</th><th rowspan="2">잔여세대추가계약 (분양권 ②)</th><th rowspan="2">분양권현황 (주택소유 판단)</th></tr><tr><th>미분양</th><th>미계약</th></tr><tr><td>가주택</td><td>100</td><td>200</td><td>100</td><td>100</td><td>x</td><td>x</td><td>x</td><td>• 분양권① 주택 소유</td></tr><tr><td>나주택</td><td>100</td><td>200</td><td>100</td><td>80</td><td>x</td><td>20</td><td>20</td><td>• 전체 분양권 주택 소유 (미분양 아님)</td></tr><tr><td>다주택</td><td>100</td><td>50</td><td>50</td><td>30</td><td>50</td><td>20</td><td>70(50+20)</td><td>•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전체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 포기 후 분양권② 계약 시 주택 소유)</td></tr><tr><td>라주택</td><td>100</td><td>50</td><td>50</td><td>50</td><td>50</td><td>x</td><td>50</td><td>•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주택 미소유</td></tr></table>	구분	공급세대	접수	당첨자	정당계약 (분양권 ①)	잔여세대		잔여세대추가계약 (분양권 ②)	분양권현황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미계약	가주택	100	200	100	100	x	x	x	• 분양권① 주택 소유	나주택	100	200	100	80	x	20	20	• 전체 분양권 주택 소유 (미분양 아님)	다주택	100	50	50	30	50	20	70(50+2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전체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 포기 후 분양권② 계약 시 주택 소유)	라주택	100	50	50	50	50	x	5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주택 미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당첨자			정당계약 (분양권 ①)	잔여세대		잔여세대추가계약 (분양권 ②)	분양권현황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미계약																																													
가주택	100	200	100	100	x	x	x	• 분양권① 주택 소유																																								
나주택	100	200	100	80	x	20	20	• 전체 분양권 주택 소유 (미분양 아님)																																								
다주택	100	50	50	30	50	20	70(50+2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전체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 포기 후 분양권② 계약 시 주택 소유)																																								
라주택	100	50	50	50	50	x	50	• 분양권① : 주택 소유 / 분양권② : 주택 미소유																																								

7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8.25.(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일반공급	1순위	2025.08.26. (화) 09:00~17:30		- 사업주체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1-6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2순위	2025.08.27. (수) 09:00~17:3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5.08.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9.02.(화) ~ 2025.09.11(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9.02.(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자격확인 포함) <표1>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공통 서류	○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인터넷 접수 시 생략)
	○		확약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 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청약home(www.applyhome.co.kr)[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청약신청지역 거주지역 등 확인용,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 변동 사항)
	○		가족관계증명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비속 : 출생일(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 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 등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기관추천 해당기관에서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추천명단으로 대체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18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임신 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재혼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출산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차] 가점산정기준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세대주이어야 함)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본인이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표4) 참고하여 발급]
	○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성년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표4) 참고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체 포함”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세대주의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세대 구성사유/현 세대원의 전입일 및 변동일, 변동 사유/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일반공급(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추가해당자) <표2>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예비입주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청약신청지역 거주지역 등 확인용, 기록 대조일을 본인 출생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이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1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가점제 당첨자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중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3>**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접수장소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표4>**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재직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급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본(부분) • 사업자 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접수장소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5.09.02.(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9.15.(월)~2025.09.17.(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1-6)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절차 유의사항

■

당첨자 사전 서류제출 안내(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일반공급(예비입주자 이하동일) 계약 시 구비서류 제출)

제출기간	제출 대상	제출장소	유의사항
2025.09.05.(금)~09.08.(월) (4일간), 10:00~16:00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당사 견본주택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1251-6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당첨자는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동규칙 제52조 제 2항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시에 서류제출을 생략한 경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25.09.05.(금)~2025.09.08.(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당첨자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정당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14)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계약시 구비사항 및 서류제출안내문(사업주체발송예정)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 하며, 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민간임대주택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9.15.(월)~2025.09.17.(수) 10:00 ~ 16:00	당사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1251-6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용에 한함.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증	-	주택전시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전자수입인지 사본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자금조달계획서	-	당사 홈페이지 게재 및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에「아파트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	주택전시관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함.(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 경우(특례 제외)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동일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동일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봄.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외관디자인(사인물 등),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타워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과세문서)이며, 세액은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임.

본 아파트 계약체결 (전매포함)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 3조와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 등기 (최초분양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준용함.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름.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101-2077-4723-02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향후 금융기관과의 CMS 체결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약정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납부일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5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1502홍길동' / 101동 202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2홍길동'으로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타행 계좌 이체 수수료는 계약자 본인 부담입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이자후불제)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 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중도금 대출 불가 등)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성(업종, 업태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계시일 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 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이자는 입주시 잔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 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 금융권 기관으로 선정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집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지)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합니다.
 -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 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 납부 회차(일자)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상 모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는 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특약도 소급적으로 실효 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공급계약상 위약금과는 별도로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에 따라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이자 외 중도금 대출금의 실제 상환 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비용(예시: 사업주체가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과정에서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 또는 연체료 등), 기타 중도금 대출원리금의 대출기한 내 미변제로 발생하는 연체료 등 제비용(명칭에 구애받지 않음)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체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 및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자의 미상환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위변제(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수인, 동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공급계약 해제 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계약자의 기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배상)하여야 합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 및 중도금 대출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 규정에 의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전매행위 제한기간(6개월)까지 제한됩니다. (매매, 중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 포함) 단, 상속은 제외합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입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 등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1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 품목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의 선택 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분양승인대상 (분양가상한제 비대상)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계약 시 동시에 진행 할 예정이며, 추가 옵션 계약은 추후 정해진 일정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가 옵션 계약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타입별, 품목별 가격이 상이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정액)	잔금(정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22,000,000	2,200,000	19,800,000

(2)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19-4383-00	우리자산신탁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 '1020702홍길동')
-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함)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 함.(주택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금액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 창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시 마감자재 등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의 사용관리상 하자 및 임의 개보수를 제외한 시공상 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짐.
- 발코니 외부창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 및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창호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대피소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상하부 세대 포함)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가구길이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 전 외부 창호 설치 후 입주하여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 창호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확장형 세대와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품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선택 옵션금액 납부계좌 및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옵션품목(확장시 유상 선택 옵션)

(1) 시스템에어컨

약식표기	구분	설치위치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비고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전체	안방+거실+침실1+침실2	8,000,000	800,000	7,200,000	프리미엄 천장형 에어컨

- 상기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거실, 안방의 냉매 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공급금액은 냉매 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 설치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2)추가 옵션 금액

품목		타입 및 위치	공급금액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가전기기	냉장고 +오픈장	전타입	5,400,000	540,000	4,860,000
	3구인덕션+광파오븐	전타입	1,200,000	120,000	1,080,000
	원통형 후드	전타입	360,000	36,000	324,000
	식기세척기	전타입	1,300,000	130,000	1,170,000
주방	주방상판 및 벽면 엔지니어드 스톤	전타입	4,000,000	400,000	3,600,000
	주방장식장+ 상부 유리장	84A	3,400,000	340,000	3,060,000
	상부 유리장	84B	300,000	30,000	270,000
거실	거실장식장	84B,C,D	2,600,000	260,000	2,340,000
	거실 바닥 +아트월 포쉐린타일	전타입	1,100,000	110,000	990,000
	거실복도 벽판넬	전타입	1,600,000	160,000	1,440,000
	현관중문	전타입	1,400,000	140,000	1,260,000
방	침실 2 붙박이장	전타입	940,000	94,000	846,000
	안방드레스룸 특화 (슬라이딩도어 포함)	전타입	4,500,000	450,000	4,050,000
욕실	욕실 특화 (조명거울, 수납형세면대, 오픈형 수납장+공용욕실 대리석욕조)	84A 부부욕실+공용욕실욕조	1,650,000	165,000	1,485,000
	욕실 특화 (조명거울, 수납형세면대, 오픈형 수납장+부부욕실 대리석욕조)	84B,C,D공용욕실 +부부욕실 욕조	1,650,000	165,000	1,485,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부부욕실	300,000	30,000	270,000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공용욕실	300,000	30,000	270,000

(3) 추가 선택 옵션 납부계좌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2동 702호 : '102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함)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 옵션품목	부산은행	113-2019-4383-00	우리자산신탁

(4) 추가선택 옵션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품목 및 계약일정, 납부방법,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해제(또는 해지)가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제(또는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타입별 유형별 추가 옵션 가능상품이 상이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계약금 입금이 진행되더라도, 불가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 입금 금액은 옵션대금의 일부로 대체 되며 환불되지 않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선택 품목 중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하부장이 설치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냉장고 +오픈장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장이 설치 제공 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3구 인덕션 +광파오븐 선택시 가스배관은 미설치되며, 배관 및 설치비용 등을 차감하여 설치된 가격이며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과, 기본장이 제공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미선택시 MMA주방상판과 도기질타일벽체 마감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 상부 유리장 미 선택시, 상부장은 일반 패트마감 시공됨
- 주방장식장 미 선택시 장식장 제외 한 후 벽지 마감됨 (84A만 해당)
- 거실장식장 미 선택시 장식장 제외 한 후 벽지 마감됨 (84A제외 됨)
- 거실 바닥 +아트월 포웨린타일 미선택시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며 아트월은 일반 타일로 시공됨.
- 복도+ 벽체 시트판넬 미 선택시 벽지마감됨
- 작은방 붙박이장 미선택시 벽지마감됨
-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가구 + 조명 미선택시 포스트형 가구가 설치 되고 벽지로 마감되고, 드레스룸 도어는 여닫이 투도어로 패드 마감되어 시공됨.
- 욕실옵션은 84A 타입 부부욕실 +공용욕실 욕조 및 84B, C, D 타입은 공용욕실+부부욕실욕조에 적용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욕실특화 미 선택시 일반 욕실장과 세면대가 설치되오니 마감재 리스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비데 미선택시 일반 양변기가 설치되오니 마감재리스트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 48조의 2 「주택법시행규칙」제 20조의2 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9년 08월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 개시일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실입주일이 공고 및 계약서상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경우에도, 중도금 이자후불제 적용은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의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관리비 및 재산세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노인정, 어린이집, 맘스스테이, 휘트니스센터, GX룸(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 주민회의실, 스크린 골프연습장,세대 창고]
- 주민공동시설은 효율적인 단지 구성 및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오피스텔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법 제37조 규정에 의함.

■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함.
-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2025년 06월 04일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모형도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주변 건물 등은 실제와 다소 상이하며, 또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등)은 향후 관할관청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는 84A, 84B타입 유닛트가 설치되어 있으니 분양 카탈로그 및 도면을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유닛트는 계약호실(라인)에 따라 좌우 대칭세대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84C타입은 84B타입과 동일한 구조와 실사용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모델하우스에 비치되어 있는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헬름,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또한,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공개공지 및 공공 보행통로, 보도등은 공공에 24시간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훼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민 부담임.
- 단지 내 설치된 공개공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주방가구, 침실 불박이장, 조명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함.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소방차 전용구획의 위치는 시공시 조경 선형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소방차 정차 공간 불법주차 및 적치 할 수 없음.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채팅,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음.(당 단지는 공동주택(아파트)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이 혼재된 단지로 공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은 불가하며, 임의단체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허락 할 경우 이에 상응 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 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 하여야 함.
- 사업주체의 허가 없이 견본주택 내 무단 사진 촬영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계약자일 경우라도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없음.
- 하차판정은 사용검사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함.
- 공고의 기재상 오류는 견본주택 설치 유닛 기준 및 계약서가 우선하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위탁 주택관리업자 등에서 계약 및 입주관리,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은 초등학교는 양사초통학구역, 중학교는 태화.다운중학교군 및 복산병영학교군, 고등학교는 중부학교군에 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배정은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에 따라 입주시점 정확히 판단 되므로 계약전 반드시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간판 설치로 인한 일광, 채광의 제한,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분쟁에 당사는 책임이 없으며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자금관리대리사무

- 본 사업은 분양사업자(사업주체) 겸 매도인인 (주)우성종합건설과 자금관리 신탁회사인 우리자산신탁(주) 간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함.
- 분양계약자는 우리자산신탁(주) 명의의 공급(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한 공급(분양)대금이 중도금대출이자, PF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 등으로 지급될 수 있음을 인지함.
- 우리자산신탁(주)는 본 사업의 자금관리신탁사로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만을 담당하며, 그 외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소유권이전사무, 하자담보책임,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지지 않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

■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주변으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각종 시설 도로 및 현황(기타 건물, 도로(진입로), 전신주, 오·우수관로 등)으로 인해 단지 및 인접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일조, 채광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시행자, 시공사,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새로이 설치되는 공개공지(설치 시설물 포함)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이에 대한 관리의 권한과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외부를 둘러싼 도로에 접한 보도는 입주민의 소유이나 공공(불특정 다수인) 이 사용하는 보도이며 지속적으로 도로의 정비기반 시설 (가로등, 가로수등을 포함)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시행자 시공사,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본 건축물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주차장 출입구 등을 같이 사용하여 혼잡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의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 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고 ,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음.
- 사용감사(준공)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청약 및 분양 계약 을 하여야 함.

■ 분양홍보물(모형, 카탈로그, 각종 광고지)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건축변경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음.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시행사)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분양 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리플렛, 공급안내서 등)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특히, 일부 분양상담직원, 부동산중개인(법인), 기타 개인이 분양사업자(시행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개인 매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 배포, 전파한 사항에 대해 분양사업자(시행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 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 광고홍보물 여부는 분양사업자(시행사)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안내 등 인쇄물과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광고·홍보물이므로 본 단지 및 주변환경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시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모형 등에 표현된 외벽 디자인 및 입면의 줄눈형태, 입면 마감재의 입면 돌출, 표현, 재료, 색채 등은 실제 시공 시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속등 외관은 관찰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에는 공급 당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샘플 세대로 사용할 수 있음. 샘플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해 인도함.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 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건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및 부대편의 시설, 문주, 미술품 및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함.
- 단지외부를 둘러싼 도로에 접한 보도(대지소유: 아파트 입주인, 이용: 공공에 이용토록 함)에 대하여는 공공이 사용하는 보도이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
-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1층 부터 지하5층의 주차장을 사용하며, 주차대수 428대(경형 및 장애인주차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 공통사항

- 단지명 '더풀 우정'은 시행사의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일부세대는 인접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와 공용 배기팬(주방배기) 및 E/V 기계실에 근접해 있어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고층 세대의 경우 측면 및 상부에 설치되는 장식 구조물과 경관조명, 외벽 사인물 등으로 시야간섭이나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옥상 구조물 설치로 인한 기동이 옥외 공간 내 추가 설치되거나 옥상 구조물의 형태, 재질,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차량 진출입구는 1개소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램프가 위치한 동의 인접 저층세대는 차량 진출입시의 알림작동음 및 주행소음과 사인물 및 차량 라이트 등으로 인한 야간 빛 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비상 차량 동선 및 접근로 확보가 필요함을 수인 동의함.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 및 소방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택배, 통학차량 정차공간 등)의 통행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량 정차공간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식재 및 차폐 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저층 세대포함)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구 경사로에 경고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 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건축 공사의 특성 상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각 세대 내에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음.
- 기계실 전기실 등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출입구 및 저층부 외벽마감은 지정석재 및 석재뿔칠 및 도장으로 마감될 예정(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프레임 및 실외기 그릴 컬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동 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 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각종 외부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인이 부담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101동,102동 아파트 옥탑층에 피난 대기공간 및 인명 구조 공간(헬리콥터 이/착륙)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눈부심,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으로 이로 인한 수인 동의함.
- 101동과 102동의 동간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동간거리,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위해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맘스테이션, 부대복리시설, 대지 내 공개공지, 소방도로, 폐기물보관소, 보행가로변, 근린생활시설, 놀이터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폐기물 보관소가 설치되고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로 폐기물보관소와의 거리는 상이함.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음.
- 입주 시 단지 내 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지하층 및 지상층 내 점검구와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됨.
- 102동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출입구는 분리 되어 있으며, 1층은 홀 및 사용 엘리베이터도 분리되어 있어, 공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음. (지하층은 공용 사용함)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 2층부터 지하5층(203동,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207동, 오피스텔주민공동시설)에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과 오피스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음,
- 풍동실험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 구조적으로 안전하나 고층건물로 인해 건축물의 흔들림이 느껴질 수 있으며, 연돌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입주민이 출입구 닫힘 관리를 해야함.
-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204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공용시설은 입주자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단, 근린생활시설 105호 옆 맘스스테이션은 주민공동시설임)
- 101동, 102동 1층 진입홀은 평면구성상 면적 등이 상이하므로 확인바람.
- 「범죄예방건축기준고시」에 따라 주요 장소에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 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함.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탑층에 설치됨.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EPS실 기준으로 설치되나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설치층 및 위치는 상이함)

■ 조경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조경선형, 바닥포장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음.
- 단지 내 식재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님.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됨.

■ 시설물

- 헬룸, 배기탑 및 제연헬룸 D.A 등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설치시설물 근처에는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 필로티 및 1층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동별로 상이함. 설치시설물 근처에는 미관저해, 소음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폐기물(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 보관소가 설치될 예정(개소, 위치 및 규격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일부 저층 호실은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 보관소의 거리는 상이하며,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지하5층~지하1층에 헬룸실, 지하1층 제연헬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옥상층에 소방수조, 지하5층 기계실,기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수조, 101동 1층에 관리사무소, 102동 1층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단지 지하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204~206동)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가 제공될 수 있으며, 위치와 크기, 형태는 관할 도시가스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부지 임대차 계약을 관할 도시가스 회사와 체결할 예정으로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무가 입주민에게 있음. 저압공급 시에는 정압실이 미설치 될 수 있음.
- 외부 전주 철거 및 지중화 설비에 따른 단지 내 1층에 지중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될 수 있음
- 101동 22층, 102동 20층에는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며, 피난층 위 아래 세대는 헬륨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음.
- 각동 주출입구 앞 무인택배함이 설치 될 예정이며, 위치나 개수는 동별로 상이하며, 이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 단지 내에는 차량 진출입구는 1개소가 있으며,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램프가 위치한 등의 인접 저층세대는 차량 진출입시의 알림작동음 및 주행소음과 사인물 및 차량 라이트 등으로 인한 야간 빛 공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차장은 지하1층~지하5층으로 진출입구는 아파트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지하 1층에 구획되어 있으며, 그밖의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 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진출입차로 유효폭 7m, 출입구의 유효높이는 2.8m로 지하로 택배차량종류에 따라 진입이 불가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수동 검용의 차수판이 설치 됨.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일부 결로수를 위한 공간이며 상시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므로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 2층부터 지하 5층 주차장 회전 경사로 진출입구에 방화셔터가 설치 됨.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기계실, 헬륨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공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RY AREA), 미술장식품, 조경시설물, 폐기물 보관소, 근린생활시설, 놀이터, 공개공지 등이 지상에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과 미관, 소음, 진동, 매연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부 천정 및 벽은 각종 배선, 배관 및 환기시설, 조명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는 빗물 등을 막기 위한 지붕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환)가 노출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1층에 19대(완속17대,급속2대, 지하 2층에 6대(완속6대)로 설치되어 있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 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대수 및 위치가 배치 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인허가권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면 만큼 주차대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 2층에서 5층(203동,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지하 1층(207동,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에 아파트 입주민과 오피스텔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음.
-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배치되고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놀이터는 지상1층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은 그 공간만 제공 될 뿐이며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커뮤니티 등을 구성하며 사업주체에게 요청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근린생활시설은 실외기실이 따로 존재하나 소음 및 진동에 취약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부 시설물 이동식 가구 및 가전 등은 제공되는 품목이 아님.
-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 A/S 센터(가칭) 로 사용할

며, 입주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공간사용료 및 각종 공과금 등) 및 시설 이전 축소등을 요구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

■ 공통사항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음.
(외부창호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m이며, 실 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 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가구(복도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수납가구, 욕실가구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단위 세대 내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 분전함, 통합 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선홍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주방옆쪽 발코니에는 긴급 상황 시 피난 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적치 및 타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며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주방옆쪽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수전 사용시 물이 넘치지 않게 유의 하여야 하며, 사용미숙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의 실외기 실이 설치되며, 실외기실의 도어 및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84A, 84B 타입 발코니, 오피스텔의 발코니 앞에 배수 입상관이 설치 되어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주방가구보다 전면이 돌출 될 수 있으며, 배치가 불가할 수도 있음.
- 침실에 분전함, 통신 단자함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기기(월패드 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냉매배관과 콘센트는 거실과 안방 벽면만 설치되며, 옵션 선택으로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될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안방용 에어컨 냉매박스 내부에는 냉매배관 및 벽걸이용 콘센트(1구형)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 없이 도배로 마감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 선택 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거실 아트-월 벽면에 플라스틱 마감커버로 설치될 예정이며,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E/V와 벽이 간섭되는 세대는 E/V 소음이 일부 들릴 수 있음.

■ 창호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강풍을 동반한 우천시에는 우수의 유입이 발행할 수 있음.
(우천으로 인한 창호 배수홀로의 우수 유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에 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류(냉장고, 김치냉장고(스탠드형 규격 적용),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류의 사이즈 차이로 인해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개별 설치시 실

측하여 진행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 2020.2.20.)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등에 따른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식탁용 조명 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타입별 유형별 추가 옵션 가능상품이 상이 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계약금 입금이 진행되더라도, 불가 항목을 선택했을 경우 입금 금액은 옵션대금의 일부로 대체 되며 환불되지 않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함.
-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 시, 별도 마감 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 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확장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건립세대 외의 타입은 모형물과 카탈로그를 참조해야 함.

■ 마감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미사용 시 해당 없음)
-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미사용 시 해당 없음)
- 인조강화대리석(현관 디딤판, 화장대 상판, 욕실 뒷 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 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가구 디테일 및 이음매 위치, 도어 나누기 등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가구류 (시스템 가구 등)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조명은 일괄 소등 스위치로 소등이 불가함.
- 목창호 공사시 stab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 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선반, 현관방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은 본 공사 시 업체 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비확장 선택 시 옆 세대(발코니확장)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의 면적의 감소 및 일부벽체가 돌출될 수 있음.
- 거실 우물천장은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타입에 따라 오픈 줄눈으로 시공 될 수도 있음.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 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천정물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니트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후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유니트는 계약호실(라인)에 따라 좌우 대칭세대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디퓨저, 점검구의 개수 및 위치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고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제품사양, 형태 등은 변경(자재품 단종,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 가격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장치, 수전,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배수배관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설계기준,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됨. 또한, 견본주택 천장, 벽 등에 설치된 DP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건식벽체,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 상의 이유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외벽 등은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제품으로 실제 본 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손잡이, 유리 등 구성요소의 형태, 재질, 색채, 사양, 열림(개폐)방향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TV 설치 방식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전원, 통신, TV용 케이블이 노출되어 시공됨.
-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설계도면이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실시공됨.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의 취향 및 식탁 가구배치 형태 등을 사유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공간 창호, 하향식 피난구,등의 위치 및 크기는 본 공사 시 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 및 사다리는 위·아래층과 교차되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류(시스템가구 포함)의 바디 및 도어 마감재 (도장, PET, LPM, 유리 등)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의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온도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될 수 있음.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부에 연출용 조명을 포함한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프레임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유상 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기본품목 또는 유상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유상옵션 미 선택 시 평면 형태, 제공품목, 조명기기의 위치, 주방의 크기 또는 주방가구 길이 등에 차이가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외부 창호 류, 세대 내 타일 류,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마루, 타일 등)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엘리베이터 홀, 승강기용량, 탑승위치)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 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비 고
회 사 명	(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즈)대림엠이씨	(주)진일기술단	해성종합기술(주)	부가세 별도
감리금액(원)	1,932,502,000	5,564,744,000	60,000,000	926,269,757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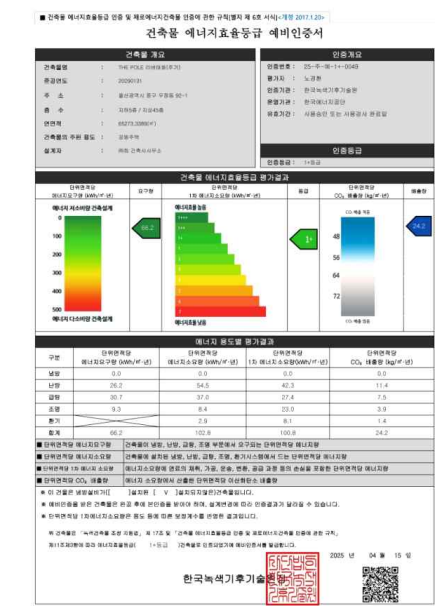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21호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tnjd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 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유효지반가속도(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반응수정계수 (R)	내진설계범주	기본진동주기(T)	내진등급 (MMI등급)
0.20 (지진지역 1)	S2(알고 단단한 지반) 기반암 심도: G.L-19.5m	1.2(중요도 1)	4.0(댐퍼설치) (내력벽시스템-철근콘크리트보 통전단벽)	C(내진등급 1)	$T = 0.0488(h_n)^{0.75}$	VII -0.224g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결과는 현장 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21호에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31,219,400,000원	제 02312025-101-0000500호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구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상호	㈜우성종합건설	㈜우성종합건설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70, 2층 (회동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270, 2층 (회동동)
법인등록번호	180111-0700286	180111-0700286

■ 견본주택 위치 및 문의전화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51-6 ☎문의전화 052-276-6800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ujeong.thepole.co.kr/>

※ 견본주택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어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 및 오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 견본주택 분양사무소 또는 사업 주체로 문의 바람.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으로 함)